3) 주 소 : 110-760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
135-703 서울 강남구 역삼1동 653-4 과학기술회관신관 1108호(기술연구부)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96호

자연재해저감신기술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저감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7월 26일

소방방재청장

1. 신청인
가. 법인명(성명) : 하서산업(주)(대표 김상국)
나. 법인등록번호 : 201311- *******
다. 소재지(주소)
- 전남 화순군 동면 동농공길 7번지

2. 기술명 : 진동차단 및 상하회동 개폐 컴프일체형 수문 기술

3. 기술내용(요약)
- 본 신청기술은 배수문에 컴프를 일체화하여 별도의 유수지나 배수장이 필요 없이 집중호우시 신속한 대응으로 내수를 강제 배수하여 침수를 예방하는 컴프일체형 수문으로서 컴프가동시 발생하는 진동을 차단하고 다양한 운영조건에 성능 요건을 만족시키는 수문의 상하 및 회동개폐기술, 고하중 수문의 안정적인 개폐로 제품의 신뢰성을 향상시켜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자연재해저감기술

4. 기술범위(요약)
- 방진가이드 및 수직진동방지장치를 통한 컴프일체형 진동차단기술, 컴프일체형수문의 상하 및 회동개폐기술, 고하중(50톤) 컴프일체형수문의 개폐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신청인 하서산업(주)(☎061-371-0144)터 및 자연재해저감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목)한국방재협회(☎070-7880-4637, 김동원)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 · 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02-2100-5496, 양기원)
(목)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동원)
1) 전자우편 : kangma73@korea.kr, rbals0523@yahoo.co.kr
2) 팩스번호 : 02-2100-5499, 02-3472-8064

3) 주 소 : 110-760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
135-703 서울 강남구 역삼1동 653-4 과학기술회관신관 1108호(기술연구부)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2-150호

유전자재조합식품 등록

「식품위생법」 제18조 및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평가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청 고시 제2009-196호)」에 따라 안전성 심사가 완료된 유전자재조합세끼리 교배하여 얻은 후대교배종 유전자재조합 옥수수 2건(Bt11×MIR162×GA21, Bt11×MIR162×1507×GA21) 및 콩 1건(MON87701×MON89788)의 안전성 평가 대상 여부를 검토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추가적인 안전성평가가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어 등록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유전자재조합식품 등록 품목

1. 등록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개발국가	통보번호	통보일	비고
후대교배종 유전자재조합 옥수수 Bt11×MIR162×GA21	신젠타 종묘(주)	Syngenta Seeds	미국	제2012-5호	2012.7.23.	
후대교배종 유전자재조합 옥수수 Bt11×MIR162×1507×GA21	신젠타 종묘(주)	Syngenta Seeds	미국	제2012-6호	2012.7.23.	
후대교배종 유전자재조합 콩 MON87701×MON89788	몬산토 코리아(주)	Monsanto Company	미국	제2012-7호	2012.7.23.	

2. 등록 조건
○ 인체 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재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2-27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규칙 제6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신청 등)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사업소별로 별지 제1호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